

# 배곧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관련 규정

제정: 2022.12.9

##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이하 “임원 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3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4학년 ~ 6학년으로 학급당 1명씩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2. 투표 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 제6조 (선거인명부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선거인명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8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년(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 3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 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 (후보자 등록)

- ①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1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공약서 1부
-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임원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등록 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제8조 제3항의 결정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선거 운동)

-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 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 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 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5명 이내(후보자 포함 6명)의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 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 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 ⑥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 제12조 (후보자 홍보 포스터)

- ①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 선물이나 음식 제공은 일체 불허한다. 자신의 SNS에 포스터를 올리거나 메신저를 통한 선거 활동, 명함 및 전단지 배포 등은 금지한다.
- ② 벽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형식으로 벽보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다.

### 제13조 (소견 발표회)

선거 당일에 사전 제작된 소견발표 영상을 학급별로 시청한다. 영상 속 발표 순서는 기호 순으로, 1인당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후보자는 합동 소견 발표회와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제14조 (피켓)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 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 운동 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운동 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 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 간 다툼
    - 나. 선거 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보호자에게 알린다.

### 제16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들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⑩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재검표가 가능한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 제17조 (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④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 ⑧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 제18조 (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 선거(6학년)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차순위 후보자를 6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5학년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5학년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되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 제19조 (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선거의 무효 결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0조 (보궐선거)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남은 잔여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1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 제22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제8조 제3항의 결정에 따르는 경우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23조 (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명칭]** 이회는 배곧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 2-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생자치회]**

- ① 학생자치회는 4-6학년 이상의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자치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보고
  2. 학생자치회 활동
  3.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 안건처리
  4. 그 밖에 학생자치회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학생자치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 의 협의회, 학교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6. 학생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6.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 지원
7.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1인, 부회장 2인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경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은 6학년 후보 중 최다 득표자
3.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계획에 따른다.

②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해당 학기 시작 이전에 시행한다.

③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기로 한다.

**제10조[후보자 자격]**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 1학기 임원(학생회장, 학생부회장)은 2학기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11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3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 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격 상실]**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3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3

## 학급자치회 규정

**제1조[명칭]** 이회는 배곧초등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2-3학년의 경우 학년이 끝나기 전 학급의 모든 학생이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2-4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개월 내외로 한다.
- ③ 4-6학년의 경우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며 학기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④ 1학년의 경우 학급자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5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6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후보자 자격]**

-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② 1학기 학급 회장은 2학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나, 부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 ③ 1학기 학급 부회장은 2학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부회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제8조[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 ①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1. 적용 대상은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 및 학급회 회장, 부회장 후보자로 한다.
  2. 적용 기간은 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3개월 이내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3. 징계 및 조치 사항은 적용 기간 중에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및 조치 사항으로 한다.
-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기간은 후보자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격 상실]**

- ① 학생(학년, 학급)회 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한다.
- ②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사항은 담임교사와 협의회를 통하여 학급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급자치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제12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③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은 4-6학년에만 적용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